

수원지방법원 2022. 4. 20 선고 2021나6106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2. 4. 20 선고 2021나6106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2. 9 선고 2019가단1272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석원재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월

담당변호사 류인규, 박아영, 윤서연, 최다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보라

변론 종결 2022. 3. 30.

판결 선고 2022. 4. 20.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2. 9. 선고 2019가단1272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6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 및 원금의 변제 명목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4,696만 원을 입금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힘들다'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이유는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재욱

판사안좌진

판사이혜미